

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

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(부재, 보관기간 경과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02. 18.

태 백



1. 제 목 :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02. 18. ~ 2020. 03. 03. (15일간)
3. 미송달내역: 붙임 참고
4. 문 의 : 태백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담당 (☎033-550-3181)
5. 기 타

가.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(부과 예정 과태료의 20/100범위 이내)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